● 제268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6. 6. 20.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1205

Ⅰ. 조례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안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안 일 : 2016. 5. 30.

다. 회 부 일 : 2016. 5. 3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의 장소 및 시설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로 취업애로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과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영업장소, 영업신고 첨부서류, 자치구의 영업장소 등 지정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제4조)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장소 지정 신청을 규정함(안 제5조)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을 규정함(안 제6조)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영업자의 범위 등, 영업신고 표시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제9조)

○ 위생, 안전 등 제반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 4건

해 당 조 문	검토의견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2조(영업장소)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를 지정함에 있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허용장소를 일정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제2조(영업장소)**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를 지정함에 있어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허용장소를 일정구역으	○ 조례안 제2조제2항의 영업의 총량규제를 구체화하여 해당조문 수정반영

총량을 제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격, 기간 제한 등) ① 시장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기 위한 **연령, 소득수준 등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격, 영업기간 등)**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의 경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호의 "취업애로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 수급자 등의 자격을 가진 자를 우선 할 수 있다.	○ 조례안 제6조제1항의 영업자격이 규제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당조문 수정 반영
② 시장은 영업장소 지정에 있어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의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 조례안 제6조제2항의 영업장소 지정을 시설사용계약으로 명확화
제8조(영업양도 금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사용계약)를 받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동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제8조(영업자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다.	○ 조례안 제8조의 양도금지 사항을 규제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당조문 수정 반영

(2)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3)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별도조치 필요 없음

4) 기타

(1) 입법예고(2015.10.15. ~ 2015.11.4) 결과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자유인	○ 제2조(영업장소)에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업장소 확대가 필요하므로 민간영역에는 기존 상권의 반발로 영업장소 확보가 어려운 만큼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시설이나 장소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을 영업장소에 포함	○ **반영** –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신설> ※ 공유재산 중 공용재산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됨 – 조례안 제2조 제6호를 제7호로 항목 변경 7.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광진구 보건위생과	○ 푸드트럭이 도심화된 서울의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용역의뢰 등) 후 조례제정 필요	○ **미반영** - 푸드트럭을 이용한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이 가능하도록 '14.8.18 식품위생법령이 개정되어 기 시행되는 제도로서 법령 개정 시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검토된 사항으로 미반영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태호)

1 제정안의 취지

○ 동 조례안은 “푸드트럭”으로 통칭되는「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1]의 영업 기반조성 및 체계적·효율적 관리방안을 제도화하여 규제 개혁과 청년 및 취약계층의 소득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음.

2 제정안의 필요성

○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법에서 규정한 8개의 장소와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 기존 상권과 마찰, 민원발생을 우려한 시설 관리운영자의 소극적 태도, 창업희망자의 사업실패 우려, 창업비용(2~3천만원) 부담에 따른 진입장벽 등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이에 동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자 영업의 제약요인을 개선하여 푸드트럭 활성화 추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서민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1) 음식판매자동차란「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2조제1항14호에 명시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의미함.

〈 푸드트럭 활성화 제약요인 및 개선방안 〉

제 약 요 인		개 선 방 안
① 한정된 영업장소	⇨	영업장소 확대를 위한 조례제정
② 소극적 사용허가(계약)		영업장소 지정 신청권 신설 공유재산 통합공모 실시
③ 창업비용, 수익성 위험		창업지원 · 교육 및 마케팅 지원
④ 불법 노점상 난립 우려		푸드트럭 실명제, 장소 · 기간 · 자격 제한, 위생검사 · 세금 · 영업양도금지 의무부과

자료: 서울시 법무담당관, “규제혁신을 통한 푸드트럭 활성화”, 2016. 01.

3 주요사항 검토

가. 목적 규정(안 제1조)

○ 안 제1조는 동 조례안의 목적조항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14호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기타 영업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밝히고 있음.

나. 영업장소(안 제2조)

○ 안 제2조제1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조의2에서 규정한 8종류[2]의 영업장소 외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장소로 제1호

2)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교), 「도로법시행령

에서 제7호까지 6종류의 영업장소와 기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로 규정하고 있음.

-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로는 제1호는 서울시나 자치구 등에서 운영하는 미술관,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 제2호는 동대문 패션타운 등의 관광특구 내 공공시설, 제3호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나 보도, 제4호는 서울시나 자치구 등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장소·시설, 제5호는 초·중고등학교 내 주차장 등과 제6호는 그 밖에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른 서울시 및 자치구 청사 등이 포함되는데,

〈 식품위생법 및 조례안에 따른 영업가능 장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조 례 (안)	(규 칙)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용재산 등 8개소	문화시설, 관광특구, **도로**, 행사개최 장소, **초·중·고등학교**, 기타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 여기에 일반위임 사항으로 규칙으로 시장이 정하는 장소까지 추가되면, (안 제3조(첨부서류)와 안 제8조(영업자의 범위 등) 제1항에 따라 장소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아야 해당 장소에서의 영업이 가능하나),

---

」 제3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졸음쉼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용재산

사실상 서울시 전역이 과도하게 영업 가능 장소로 개방되어 본래의 목적인 음식판매자동차 활성화를 넘어서, 조례로서 장소를 지정하는 의미마저 퇴색시킬 우려가 있음.

- 또한 3호에 규정된 도로는 「도로법」 제61조[3]에 의거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공작물·물건, 그 밖에 시설을 신설·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해석 상의 이견이 있었으나, 집행부에서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해당 내용에 대해 질의한 결과 “푸드트럭인 경우 특정장소에서 고정적·유형적 형태로 일정기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이라는 회신이 있었음(<별첨3>참조)..
- 반면 5호에 따른 초·중·고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소관 기관으로 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의견을 밝혔음.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상기 서울시 조례안에 의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내

3)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에 설치될 경우 학교 내 및 주변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 학교 내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허용될 경우 **외부 출입인의 통제가 어려워 학생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 최근 매스컴 등에서 거론된 학교 내 및 주변에서 외부인에 의해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행위, 성, 폭력 등에 대한 취약지역 및 시설을 순찰 지원하기 위해 **학교보안관실(CCTV 포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관할 경찰서(여성청소년계)와 연계한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서도 학생안전을 보호하려는 단위학교 및 유관기관/단체의 노력과 협력이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행정구청)에서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경계선 200m 범위)**을 지정·관리하여 학교주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조성을 위해 부정·불량식품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은 영업특성상 어린이 및 청소년의 안전문제를 취약하게 하여 기존 법체계 운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 학교 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조항은 부적절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내에 설치될 경우 업소의 위생관리 미흡에 따른 식중독사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 **급식학교의 급식실(조리실)**에서는 영양(교)사 및 조리종사원에 의해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은 **영업특성상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기가 어렵고, 위생관리 미흡(불량)으로 항상 식중독사고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학생들은 어리기 때문에 식중독이 걸릴 확률이 성인보다 높음) **또한, 고칼로리·저영양 식품 공급으로 인해**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은 영업특성상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한 위생·안전관리가 불완전하고, 영양관리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학교 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조항은 부적절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내에 설치될 경우 학부모 민원 및 인근에 위치한 동일·유사업종 음식점/제과점 등의 반발로 인해 단위학교에서는 각종 민원으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학교는 교육기관으로 식품판매소가 아닙니다. 서울시(식품안전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로 취업애로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과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제안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가 학교 내로 들어오게 되면, 학부모 민원 및 인근에 위치한 동일·유사업종 음식점/제과점 업주의 반발로 학교 뿐만아니라 교육(지원)청은 각종 민원접수로 인하여 학교 운영/지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은 영업특성상 학부모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고,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 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조항은 부적절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 자치구 영업장소 지정 관련 규정(안 제4조)

○ 안 제4조는 동 조례안에서 지정한 장소에 이외의 장소를 구청장이 구조례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관사무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해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이 때 '그 사무'란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고, 자치사무라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미치는 소관 자치사무만을 의미하므로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고 이러한 소관사무 원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경우에도 해당함.[4)]

라. 그 외 기타 사항

○ 안 제6조에서는 동 조례의 입법취지를 살려 취업애로 청년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시설사용계약에서 우선권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안 제8조는 음식판매자동자 영업을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로 정하여, 영업권을

4)법제처(2014),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p. 191-192.

양도양수하거나 전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 안 제11조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이 창업자금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음식판매자동차 임대, 브랜드 개발 등의 음식문화산업 진흥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한편 국세청[5]에 따르면 2014년 폐업한 자영업자의 20.6%가 음식업으로, 이는 비교적 창업이 쉬운 업종인 음식업에 창업을 했다가 경기침체와 내수불황으로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사업실패로 인해 투자금 회수는 커녕 융자금을 갚느라 빚더미에 빠지는 경우도 늘고 있음.

- 최근 5천만원을 들여 푸드트럭 2대로 창업했던 “푸드트럭 1호” 운영자가 4천만원의 손실을 보고 3개월만에 폐업하였다는 인터뷰[6]를 참고하면 동 조례안에 근거로 하여 청년이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음식판매자동차 활성화” 정책이 푸드트럭 대수나 푸드트럭 영업 현황 같은 단순 실적만을 좇기보다는 운영자들에게는 생업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5) 통계청, “2015년 국세통계연보”, 2016년.
6)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016년 5월 10일.

<별첨 1> 서울시 음식판매자동자 영업장소 현황

푸드트럭 설치장소 현황

(2016.3.22.)

▢ 시립 체육시설 (7개소)

○ 직영 : 잠실운동장, 목동운동장, 구의 및 신월야구공원

○ 위탁 : 월드컵경기장, 서남권돔구장, 장충체육관

▢ 도시공원 (353개소)

○ 근린공원(314), 주제공원(39)

▢ 하　　천 (40개)

○ 국가하천 (4) : 한강, 중랑천, 안양천, 아라천

○ 지방하천(36) : 성북천, 홍제천, 불광천, 도림천, 탄천, 양재천 등

▢ 문화시설 (122개소)

연번	구　분	시설수	주요 시설명
	합 계	122	
1	시립문화시설	18	남산한옥마을,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등
2	구립미술관	3	종로 박노수미술관, 겸재정선미술관 등
3	구립박물관	10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서울교육박물관 등
4	구립문화예술회관	15	강동아트센터, 충무아트홀 등
5	지방문화원	25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등
6	구립도서관	51	강북문화도서관, 솔샘문화정보서관 등

▢ 관광특구 내 공공시설 (55개소)

연번	관 광 특 구 명	공공시설 수
	합 계	55
1	종로 · 청계 관광특구	7
2	명동 · 남대문 · 북창동 · 다동 · 무교동 관광특구	24
3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16
4	이태원 관광특구	4
5	잠실 관광특구	3
6	강남마이스 관광특구	1

※ 공공시설 : 주민센터, 파출소, 우체국, 학교, 119안전센터 등

❑ 도 로

구 분	계	광 로 (40m이상)	대 로 (25~40m)	중 로 (12~25m)	소 로 (12m미만)	광 장 (개소)
연장(㎞)	8197.9	235.1	721.3	887.4	6,354.1	93.0
면적(㎢)	83.61	10.603	21.146	14.799	34.273	2.789

○ **도로상 포켓 주차장 설치 : 53면**
○ **보행자전용도로 : 68개소**

※ 서울시 각 실국에서 음식판매자동자 영업이 가능한 장소를 제출한 자료를 수합하여 작성한 자료임.

<별첨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절차

업무절차	관련 기관	영업자	비고
영업자 모집 공고	**(국가 및 지자체 / 민간)** ○ 영업관련 내용 공고 - 영업자 수, 장소, 기간, 영업시간, 업종(업태) 등 - 사업계획서(안) 제출	○ 영업자 모집공고에 따라 관련서류 제출 - 사업계획서에 식수 조달 방안 등 기본적인 사항은 의무적으로 기재	○ 허용 지역별(유원시설, 도시공원, 하천부지, 관광지, 체육시설)로 해당 기관에서 모집공고 실시
사업자선정 (계약체결)	**(국가 및 지자체 / 민간)** ○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 계약서를 푸드트럭 영업신고 시 지자체 위생담당 부서 제출	○ 관리 주체가 민간인 경우, 사업시행자와 계약 체결
자동차 구조변경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 -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한 경우 승인(서류검사) ○ 구조변경 적합여부 검사 -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한 경우 승인(자동차검사)	○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을 받아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구조변경 시공 ○ 자동차 구조변경 시공 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구조변경 적합여부 검사	○ 용도가 이동용 음식 판매 특수자동차로 제조 된 경우, 구조변경 불필요 ○ 영업신고 시 자동차 등록증 구비(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영업자 제출)
액화석유가스 안전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완성검사 승인	○ 액화석유가스 시설 시공 후 완성검사 신청 - 승인신청 서류(3종) 제출	○ 자동차 구조변경 후 적합여부 검사 시 완성검사 합격증명서 제출
위생교육	**(위생교육기관)** ○ 업종별 위생교육실시 - 제과점영업: 제과협회(1회/월) - 휴게음식점 휴게업중앙회(2회/월)	○ 영업종류에 따른 위생교육 수료 - 신규교육: 6시간(영업전) - 보수교육: 3시간(매년)	○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신고 시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
건강진단	**(보건소/병원/의원)** ○ 푸드트럭에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조리·판매하는 영업자/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 영업 시작 또는 종사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 영업 개시 후 주기적(1회/년)으로 받아야 함 ○ 영업신고 시 건강진단 결과서 제출
영업신고	**(시·군·구 위생담당 부서)** ○ 식품 영업신고 승인 - 푸드트럭 허용지역 계약서류, 자동차등록증 등 확인	○ 시·군·구 식품 위생담당 부서에 구비서류를 갖춰 영업신고 신청 - 구비서류 제출	○ 영업신고 승인 기관은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현장 확인
영업신고변경 폐업	**(시·군·구 위생담당 부서)** ○ 영업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 승인	○ 시·군·구 식품 위생담당 부서에 구비서류를 갖춰 영업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 신청서 제출	○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영업이 자동 폐업되는 것으로 영업신고 시 조건 부여

자료 : 국무조정실 등, 「이동하는 식품 조리·판매업소 영업절차·위생·안전관리 매뉴얼」, 2014. 11. 12.

<별첨 3> 음식판매자동자 도로점용허가 대상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신 서울특별시장(보도환경개선과장)
(경유)
제목 질의에 대한 회신(푸드트럭 도로점용허가 대상여부)

1. 서울특별시 보도환경개선과-5472(2015.12.30.)호 관련입니다.

2. 귀 시가 질의한 "푸드트럭 도로점용허가 대상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회신

「도로법」제55조에 의하면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고정적?유형적 형태로 일정기간 정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푸드트럭인 경우 특정장소에서 고정적?유형적 형태로 일정기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일 것이며, 점용물의 종류는 노점으로 판단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인

주무관 윤순규 시설사무관 박성열 과장 전결 06/15 이성훈

협조자

시행 도로운영과-2487 (2016.06.15.) 접수 보도환경개선과-7754 (2016.6.15.)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916 /전송 044-201-9456 / yoon9893@molit.go.kr / 비공개(5)